

세계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2010. 8. 31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요 약>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OECD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회원국 실업자가 50% 증가. 2010년 4월 현재 OECD 평균 실업률은 8.7%, 전체 실업자 수는 4억6천5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말 예상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

- 대량실업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고용창출, 실업급여, 기타 사회부조 개정을 통한 실직자의 소득 보조 등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 조업시간 단축이나 일시해고(layoff)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으며, 기술훈련과 구직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노동신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대량해고 대신 조업시간단축제와 같은 노동시간신축화 방안을 도입함. 일본의 경우, 주로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되었음. 프랑스도 합의해지라는 보다 신축적인 해고 방안을 법제화했고,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개악하여 노동신축화를 강화하는 과정임.

- 세계 노동조합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유럽 노조의 코포리티즘, 미국 노조의 민주당 공조,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 유럽 노조들은 노사정 협정 또는 노사 협약을 통해 노조가 일정한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사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코포리티즘을 채택. 노조들은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 인적자원(장기 고용 숙련 노동자)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 신축화라는 목표를 수용.

- 미국의 노조들은 오바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지지와 로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 미국노총(AFL-CIO)과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오바마 정부에게 노동자자유선택법(Employment Free Choice Act, EFCA)의 입법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반구 주류 노조운동의 퇴조에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새롭게 주목받은 브라질노총(CUT)과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경제위기 대응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노총이 톨라정부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2010년 대선 승리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남아공노총은 좌파 주도 노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 글은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한국 노동자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함.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비판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의 문제점 비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포리티즘 비판. 이러한 비판 속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와 계급적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함.

<차 례>

1. 2007-09년 세계 경제위기와 실업	3
1) 실업률 추이	
2) 선진국 실업의 특징	
3) 신흥경제국 실업의 특징	
4) 소결	
2.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대응	7
1) 개요	
2) 각국의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 정책	
3) 각국의 노동신축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4) 소결	
3. 세계 주요 노조의 경제위기 대응: 지역·국가별 유형	15
1) 유럽의 코포러티즘: 노사합의·사회협약	
2) 미국: 자-로 공조 하 친노동 정부 로비	
3) 남반구: 브라질과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 본 정치세력화	
4. 평가와 시사점	20
1)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2)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인가 단체교섭의 초민족화인가	
4) 노조운동의 이념과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5) 노동조합 국제주의: 대안세계화-대안지역화	
6) 경제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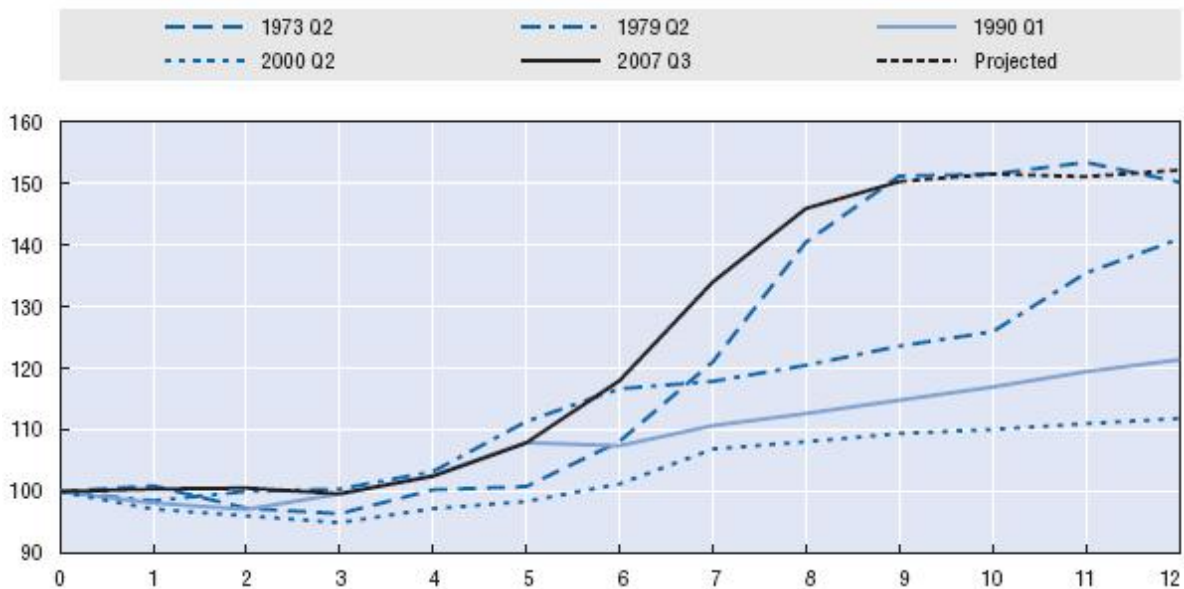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2009년 하반기 이후 반등세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던 경제위기는 올해 들어 유럽 재정위기로 그 모순이 파생 되면서 더블딥 또는 장기 불황의 전조를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가 노동자계급에게 끼친 영향을 고용-실업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2008-09년 세계 각국의 정책대응을 검토함.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 노동조합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한국 노동자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함.

1. 2007-09년 세계 경제위기와 실업

- 올해 초 발간된 「2010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 전망」¹⁾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위기가 노동자 계급에 끼친 영향을 개관함. 필요할 경우 OECD 고용 통계 월보를 보충함.

1) 실업률 추이

- OECD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회원국 실업자가 50% 증가. 2010년 4월 현재 OECD 평균 실업률은 8.7%, 전체 실업자 수는 4억6천5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말 예상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로, 2008년 3/4분기에서 2010년 1/4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그림1> 참조).



<그림1> 경기침체 발생 시점 이후 분기별 실업률 궤적 비교. 자료: OECD, 2010. 가로축 단위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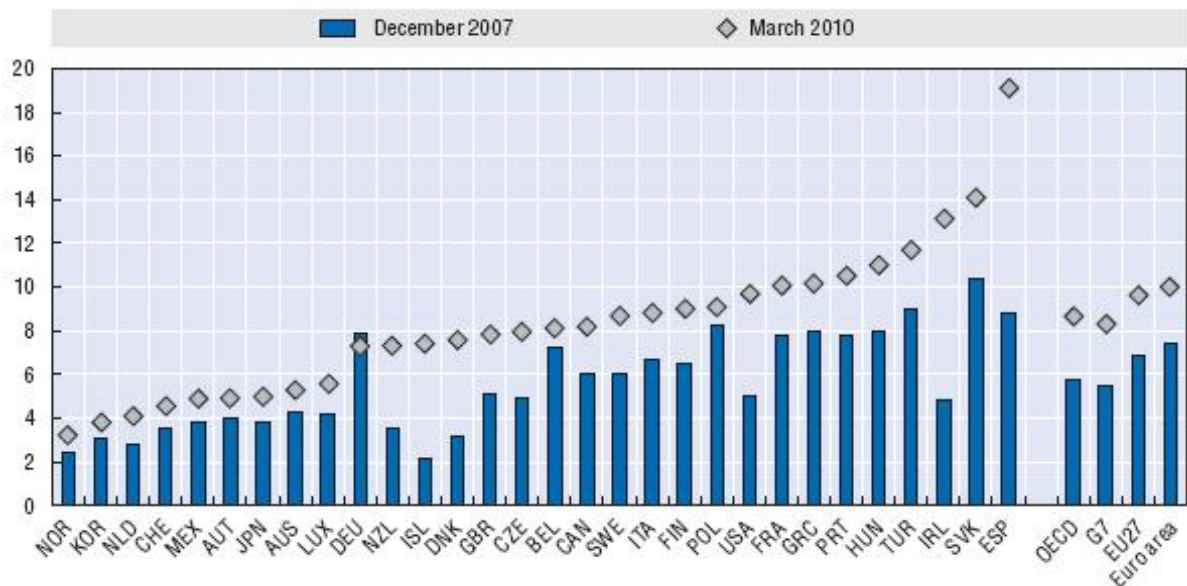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히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최근 실업률은 유럽통합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표1> 참조). 예외적으로 실업률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조업시간단축제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됨.

1)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201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010년 4월 말
OECD 평균	5.8	6.1	8.3	8.7	8.7
G7 평균	5.4	5.9	8.0	8.3	8.4
미국	4.6	5.8	9.3	9.7	9.9
유럽연합	7.1	7.0	8.9	9.6	9.7
유로존	7.5	7.6	9.4	10.0	10.1
독일	8.4	7.3	7.5	7.4	7.1
일본	3.9	4.0	5.1	4.9	5.1
한국	3.2	3.2	3.6	4.3	3.7

<표1> OECD 주요국 2010년 4월 실업률. 단위는 %. 자료: OECD, 2010.6. 재구성

- OECD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19.7%), 슬로박(14.1%), 아일랜드(13.2%), 포르투갈(10.8%), 헝가리(10.4%), 프랑스(10.1%) 등이 두 자릿수 실업률을 기록. 반면 네덜란드(4.1%), 일본(5.1%)이 낮은 수준에 속했으며, 한국의 경우 3.7%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미국은 9.9%, 유로존 16개국은 10.1%, 선진7개국(G7)은 8.4%를 기록(<그림2> 참조).



<그림2> OECD 회원국 실업률 시기별 비교: 2007년 12월-2010년 3월. 자료: OEC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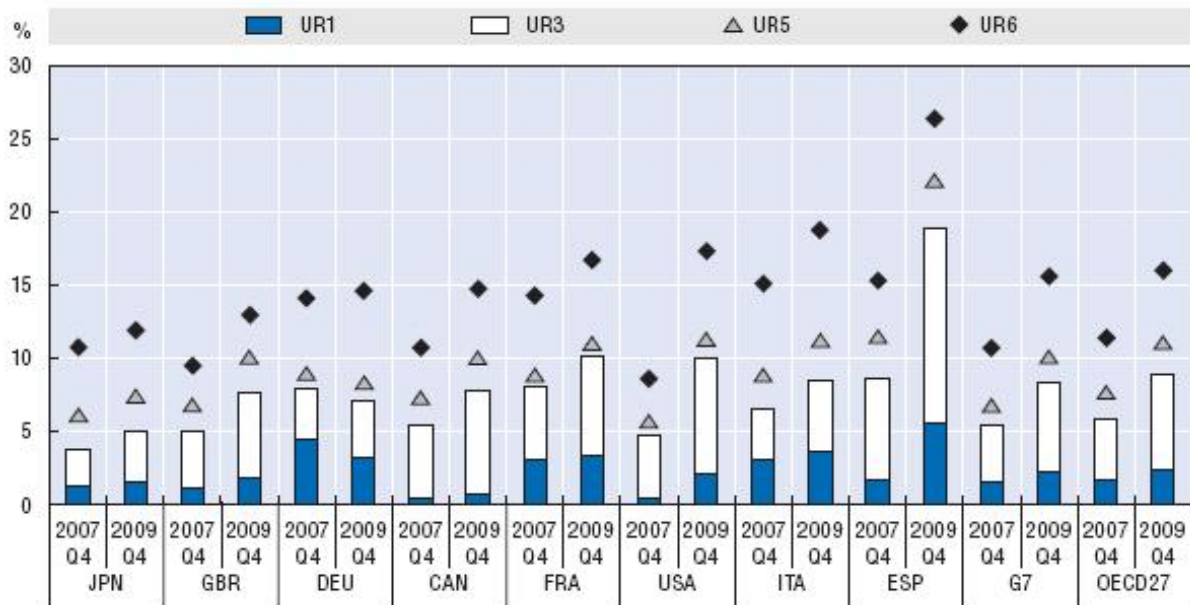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의 실업률은 향후 1년 정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경제위기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시차를 두고 발현되기 때문.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국가수준의 특별 위기지원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2) 선진국 실업의 특징

- 국가별로 보면, 경제위기가 고용에 끼친 영향은 매우 불균등. 생산 감소보다 금융·주택시장의 거품 붕괴가 불황의 주요 역할을 했던 나라, 가령 스페인·미국·아일랜드 등에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 반대로 수출하락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나라들의 경우 생산 감소에 비해 실업이 적게 증가. 한편 비슷하게 생산이 감소한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각 국별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에 따라 실업률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임.
- 집단별로 보면, 임시직과 청년층·저숙련·이민자 등 취약계층에서 실업이 집중적으로 발생. 비중이 높아진 임시직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체적으로 임금소득이 급감하고 실업보험 수혜자도 감소.

특히 경제위기가 청년실업에 미친 영향이 막대했는데, 2009년 말 기준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2007년 말에 비해 5.3% 포인트 증가한 18.8%를 기록. 2010-11년 중 청년실업률은 20% 내외가 될 전망. 2009년 말 기준 주요국 청년실업률은, 미국 18.8%, 일본 9.3%, 영국 19.8%, 스페인 40.8%.

-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부문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 그 결과 2007-09년 경제위기에서는 유달리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이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가 노동자계급에 끼친 충격은 공식 실업률의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음. 2009년 말 현재 OECD 회원국의 경우, 한계노동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와 불완전노동자(underemployed workers) 수가 공식 실업자 수를 초과함(<그림3> 참조).



<그림3> 주요국의 한계노동자와 불완전노동자를 포함한 확장 실업률. 자료: OECD, 2010.

* UR1: 장기실업자, UR3: 실업자, UR5: 실업자+한계노동자, UR6: 실업자+한계노동자+불완전노동자

- 불완전노동자: 경제적 이유로 법정 주당노동시간 이하로 근무한 상용직 노동자 또는 상용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파트타임 노동자
- 한계노동자: 과거 4주 동안 구직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취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로, 한계노동자의 하위 범주. 구직단념자라고도 함.

<표2> 유사실업자의 정의

- 일본과 유럽의 일부 나라(독일·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업시간단축이 노동투입 감소 수단 중 큰 비중을 차지함. 조업시간단축을 통한 조정이 전체 노동투입 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다른데, 가령 덴마크·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 20% 이하인 반면, 한국·노르웨이·호주·독일·슬로바키아·공화국은 95% 이상을 차지함. 대체로 GDP 감소에 비해 실업의 증가가 적은 나라일수록 조업시간단축에 더 많이 의존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경기침체가 짧고 약한 나라일수록 조업시간단축을 통한 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각국별 경제구조나 노동시장 제도의 차이가 반영됨. 시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경기침체 초기에 조업시간단축이 선호되고 침체가 진전될 경우 고용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음. 조업시간단축과 같은, 기업에 의한 ‘노동 축장(labor hoarding)’ 유형은 실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축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함께 시간당생산성도 하락하는 나라의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의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총노동투입 조정과 임금의 관계는 나라마다 매우 이질적. 실업률과 임금상승은 미약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저임금·일용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통계상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임금과 생산성은 보다 강한 양(+)의 관계를 보임.
-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겠음. 일본은 GDP가 정점 대비 8% 이상 하락했지만, 실업률은 단 0.6% 증가. 이는 일본의 노동시간 및 임금의 신축성 때문. 2009년 노동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3.3%(제조업은 6%) 감소. 전체 조업시간단축의 1/6은 시간제노동자(전체 고용의 1/4)의 노동시간 감소분(제조업에서는 미약), 1/3은 상용직(특히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의 감소분, 1/2은 상용직의 표준노동시간의 감소분임. 조업시간단축의 영향으로 실질임금도 감소. 이는 총노동시간의 감소와 시간당 실질임금 감소 때문. 실질임금 감소의 2/3는 초과근로수당 감소분, 1/4은 표준급 삭감분(시간단축과 기준임금 삭감이 동시에 영향, 6:4), 5%는 상여금 삭감.

3) 신흥경제국 실업의 특징 (* 브라질·칠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남아공·터키 등 총 9개국.)

-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은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의 감소를 통해 신흥경제국으로 이전. 세계경제위기가 신흥경제국에 전달되는 첫 번째 통로는 수출. 과거의 신흥국 경제위기와 달리, 자국화폐의 대규모 평가절하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교역재 부문의 고용이 큰 타격을 입음. 경제위기 시기 OECD 수출은 평균 6% 감소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러시아(11%)가 높은 수준이고 브라질(4%)이 낮은 수준.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의 수출이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한 이유는 비교적 무역 개방도가 낮고, 남-남 교역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다음으로, 신흥국의 경우 대체로 금융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적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국제적인 민간 자본 유입(특히 은행대출과 포트폴리오 투자)이 급격히 줄어들며 신용의 제한이 발생.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맞이할 당시 재정적자·국가부채 비율이 낮고 인플레이션율도 높지 않아 위기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침체 시기 동안 누적 성장률 손실(침체가 없었을 경우 예상 누적 성장률과 실제 누적 성장률의 차)을 비교하면, 러시아와 터키는 OECD 평균의 2.5배나 되었고, 멕시코는 1.6배, 칠레, 남아공·브라질은 평균과 비슷했고, 중국·인도·인도네시아는 평균 이하였음.
- 최근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는 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 신흥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러시아 45%, 인도 8%). 절대 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일일생계비가 2달러 이하인 인구 비중은 인도 76%, 남아공 43%, 중국 36%, 브라질 18%, 터키 9%, 칠레·멕시코 5% 미만 순.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빈곤개선 추세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빈곤층 가구들에서의 교육과 의료지출 감소로 노동시장에 장기적인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음.
-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 신흥국의 경우 실업급여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이 비공식 노동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추세. 게다가 신흥국 노동력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함. 비공식노동이 비중이 매우 큼. 비공식노동을 사회보장제도에 미등록된 노동자, 관련 통계가 없을 경우 자가고용노동자로 규정할 경우 멕시코(54%)에서 남아공(26%)에 이르기까지 그 비중이 매우 높음. 청년, 저숙련/반숙련 노동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은 경기하강 시기에 비공식고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 신규 진출 노동력의 공식일자리의 구직은 더 어려워지고 ‘비공식노동의 함정’이 강화될 수 있음.
- 실업이 증가하고 비공식 부문으로 노동력이 유입된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률이 상승. 게다가 빈곤률과 비공식노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효과가 제한적. 신흥국의 경우, 대체로 사회보장이 낮은 수준이며 일부 공식 노동자에게만 해당. 실업보조 시스템의 범위와 급여수준도 낮음. 현금지원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그나마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지만, 결국 문제는 재정적 한계. 재정 제약 이외에도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서도 제약이 따름. 신흥국 경제위기의 효과는 이러한 ‘빈곤 함정’(교육·

의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 길게 지속될 전망이다.

4) 소결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 성장은 여전히 주춤. 게다가 생산 증가 추세가 견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장 침체를 신속히 흡수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 특히 많은 실업자들이 장기간 실업을 경험하면서 순환적 실업의 급증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대량 실업이 발생한 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고용 창출 대책이 절실한 반면, 조업시간을 조정한 나라의 경우 소위 ‘고용 없는 회복’이 주요 우려사항.
- 특히 각국은 전례 없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을 감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 올해 초에 대부분의 정부가 2010년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투입할 재원을 현 수준에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하기로 계획. 그러나 재정 적자 감소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한정된 재원을 할당해야하는 힘든 결정에 직면. OECD는 ‘위기에 도입·확대된 고용 국고보조는 초기 회복단계에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예산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시 조치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세계은행(WB)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정책은 ‘일자리의 안전성’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성’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하며, 노동의 이동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세계노동기구(ILO)²⁾는 양질의 일자리 및 빈곤감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제1의 과제로 제시(이는 곧 고용 안전성과 신축성의 동시 확보를 의미). 이와 함께 생산적 투자 및 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재편, 빈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강화, 고용촉진 및 부의 공정한 분배, 민간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조세 및 사회정책을 권고.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으로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집약.

2.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대응

- 세계 각국은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경기부양책을 통한 고용 유지·창출과 노동신축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음. 주요국의 정책대응을 살핀 뒤 약평을 내림.

1) 개요

- 우선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고용창출 등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정책을 시행함. 실업급여, 기타 사회부조 개정을 통한 실직자의 소득 보조를 강화함. 조업시간단축이나 일시해고(layoff)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남. 또한 많은 국가들이 기술훈련과 구직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있음(<표3> 참조).

2) ILO, “Recovering from the crisis: A Global Jobs Pact”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Ninety-eighth Session, Geneva, 2009.7.

정책 방향	내용	국가 수
노동수요 창출	고용보조, 퇴직 인센티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6개
	비임금 노동비용(기업의 사회보장 부담) 경감	16개
	조업시간 단축	22개
불완전노동자 지원	Activation requirements	11개
	구직 보조와 노동시장 매칭 지원	21개
	신규 고용 기업 인센티브	8개
	노동 체험 프로그램	11개
실직자와 저임금노동자 소득 보조	기술훈련 프로그램	23개
	실업급여 확대	15개
	사회 부조	5개
	기타 수당이나 지원	15개
기타 교육·훈련	저소득자 재정 지원	15개
	취업자 기술훈련	14개
	견습제도	10개

<표3> 2009년 ORCD 회원국 노동정책. 자료: OECD, 2009.

-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한 포괄적 대안으로 노동신축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제시하고 있음. 본래 ‘일자리 나누기’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지킨다는 개념. 이때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임금 삭감을 수용해야 함. 이번 경제위기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노사정합의를 통해 사용자나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삭감 분을 분담하기도 했는데, 유럽 국가들의 조업시간단축제나 부분실업급여제, 일본의 고용조정금조성제가 이와 관련된 정책임. 최근 일자리 나누기 개념은 교대제 재편, 일시 휴직, 교육휴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 한편 일자리 나누기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직무분할(job sharing)’ 방법도 있는데, 이는 가령 1일 8시간의 풀타임 일자리를 두 개의 4시간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함.³⁾

2) 각국의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 정책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신정부 취임 이후 향후 2년간 775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0년까지 GDP(국내총생산)를 3.7%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중 고용정책은 △2010년 말까지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공시설 공사를 통한 건설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중심(90%)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함. 고용 유지·창출 대책으로는 신규 채용 중소기업 지원(일자리 1개당 5천달러 세금 감면) 및 중소기업 대출지원(300억달러), 실업자(주로 참전용사와 청년층) 고용 기업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밖에도 실업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구직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을 위한 ‘인력투자법(100억달러)도 발효⁴⁾
-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Europe 2020』을 제안. 고용 및 사회 분야와 관련하여, EU는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기치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고용률 제고 및 빈곤 해소를 주요 목표로 내세움.⁵⁾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이주자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20~64세 고용률을 2020년까

3) 한국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동결·반납, 혹은 대출 초임 삭감을 통해 청년층을 채용하는 ‘임금 삭감’의 방식이 중심을 이룸. 따라서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 개념은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조합의 양보교섭 개념과 호응. 이상 ‘일자리 나누기’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위기와 고용』, 2010. 참조.

4) 박윤희,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1월호,

지 75%이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주 목표⁶⁾

- 독일은 시장수요 감소 및 재고증가로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고를 방지하고 해당 노동자 직업훈련을 유도하여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시간단축제’(Kurzarbei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 이와 함께 조업시간 단축 등에 따른 유희인력을 대상으로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알선 강화.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자 급증을 예방하는 한편,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대비한 노동력의 질 향상을 목표. 그밖에도 저소득계층의 생계 지원책을 제공. 실직상태인 영세민(Harz-IV-Familien)의 부양자녀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증액하고 모든 가계에 자녀 1인당 100유로의 특별지원금(Kinderbonus)을 지급.
- 네덜란드도 기업이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삭감액을 최대 24주까지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을 도입. 이와 함께 노령인구 취업 확대를 위해 62세 이상 노동자 취업 기업에 대해 3년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노동자에게는 감세 혜택 부여.
-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유럽 국가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 편성된 재정의 대부분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방법을 구사. 스페인의 경우, 지자체 추진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80억유로, 이탈리아의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0억유로 투자.
- 일본은 고용 유지·창출 대책으로 비정규직·고령자 임시 고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례교부금 지원(‘긴급고용창출사업’, 4,500억엔),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미숙련 실습형고용, 1인당 10만엔, 정규고용 100만엔), 파견노동자 등 해고 회피 시 고용 지원 등 대책을 제시. 이외에도 직업훈련 대책으로 긴급인재육성·취직지원기금(7,000억엔) 등을 마련.

3) 각국의 노동신축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각국의 노동신축화 정책을 특별히 ‘일자리 나누기’에 국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국의 경우 일시해고와 재고용(recall)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고, 다만 1980년대 이후 임금 동결·삭감을 통한 고용유지 타협 관행이 발달함.
- 미국에 비해 해고 비용이 높은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동신축화 제도를 통해 ‘내부적 신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 이를 통해 독일 노사는 산업-기업 특수적 숙련을 증진시켜 경쟁력을 확보. 이와 유사하게 네덜란드 역시 상용직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일-가사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그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가운데, 특히 상용직 파트타임의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⁷⁾
- 일본도 전통적으로 해고 대신 잔업시간 조정, 전직제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의 신축성을 확보.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의 확대로 전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독일과 같은 대륙유럽 국가에 비해 해고가 자유로운 대신 실업보호가 발달하여 일자리 나누기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5) 유럽의 고용률은 미국·일본에 비해 낮으며, 특히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경우 현저하게 낮음. 더불어 금년 경제 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이 급증. 유럽의 경우 20-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64%, 여성은 59.1%, 고령자(55-64세)는 45.6%임. 청년실업률은 21%에 육박. 미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각각 72%, 71%이며, 여성은 70.4%, 66.9%, 고령자는 62%, 62%임.

6)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10.3.

7)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파트타임(노동주 37시간 이하)이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3/4이 파트타임직. 이러한 네덜란드의 노동신축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교환한 1982년 ‘바세나르 협약’에서 기원. 네덜란드의 노사정은 바세나르 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은 임금억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기회를 늘리고 정부는 재정지출의 억제와 함께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데 합의. 이후 네덜란드는 1999년 신축적안전성에관한법률(Wet Flexibiliteit en Zekerheid)을 도입하여 노동력의 신축성과 고용 및 소득의 안전성을 교환.

(1) 독일

- 이번 경제위기에서 독일은 조업시간단축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 1993년 폴크스바겐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런 방식은 이번 위기 시기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전형성을 띄고 있음.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나 직장협의회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정리해고의 방식의 고용조정 대신 정부의 지원 아래 조업시간단축제와 노동시간계좌제 등의 기제를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독일의 노동정책을 ‘내부적 신축화’라고 부르기도 함.⁸⁾

	내부적 신축화	외부적 신축화
수량적 신축화	- 노동시간계좌제 -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	- 해고 - 파견근로 - 한시적 근로
기능적 신축화	- 교육훈련 - 배치전환 - 작업조직	- 전직지원 프로그램
임금 신축화	- 개방조항 - 성과급	- 임금보조금

<표4> 고용 신축화의 구분. 자료: 이상민, 2007.

- 독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단체협약으로 확립된 신축적 노동시간 제도와 노동시간계좌제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지키기 방안이 개발되었음.⁹⁾ 고용유지를 위해 1차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조치들이 활용되지만,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조업단축에 대해서는 연방노동청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 최근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30시간(서독 지역) 또는 33시간(동독 지역)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2004년에 체결된 포르츠하임협약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혁신역량 개선, 경쟁력 강화, 투자조건 개선 또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차원의 협약이 산별 차원의 협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함.
- 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노동시간 신축성 조치 이상이 필요할 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단축조업기금(Kurzarbeitgeld)을 활용할 수 있음. 조업단축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세후 임금의 60~67%를 국가가 책임지며, 그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 단축조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에서는 잔업을 폐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계정에 축적된 적립시간이 다 소멸돼야 함.¹⁰⁾

8) 독일의 내부적 신축화에 대해서는 이상민, 「독일 기업의 고용과 경쟁력 협약을 통한 내부적 유연화」,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2007, pp.63-86.

9) 1993년 폴크스바겐은 직원 3만 명을 정리해고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금속노조(IG Metall)와의 단체협약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28.8시간으로 줄임. 주간 5일 근무를 계속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대라는 명분을 위해 임금을 삭감. 2006년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25~33시간 사이로 단축하는 방안을 도입. 시간외수당은 3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 이런 방식을 통해 폴크스바겐은 노동비용의 변동없이 신축성 있는 노동시간을 확보.

10) 단축조업은 일반적으로 단협 상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장치들이 다 소멸된 뒤 활용됨. 일례로 2008년 말까지 노동시간계좌제와 단협 상의 신축성 조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왔던 다임러 공장에서는, 2009년 1-3월 동안 전체 노동자의 2/3에 대해 단축조업기금 혜택을 받기로 합의함. 다임러 공장에서는 주간조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계정에서 200시간을 앞당겨 사용했고, 크리스마스 기간의 휴가를 4주로 연장하여 실시. BMW 뮌헨 공장에서는 노동시간계정의 ‘마이너스 축적량’을 300시간으로 확대함. 즉 마이너스 통장처럼 저축해 놓지 않은 시간을 먼저 휴일로 사용한 것. 포르쉐 사에서는 노동시간계좌제를 활용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기간에 8일간의 휴업을 단행. 상용차 생산업체인 MAN 사에서도 노동시간계정을 활용해서 뮌헨, 뉘른베르크, 잘티터, 슈타이어 공장의 생산을 40-5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함. 이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위기하 미국과 유럽의 일자리대응 문제」, 『노동사회』, 2010년 4-5월호 참조.

-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 신축화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단적으로 폴크스바겐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16,500명 가량의 비정규직들의 상당수를 해고시킬 계획. 이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가로 비정규직의 희생이 이루어짐을 의미.¹¹⁾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에서는 5만-10만명의 파견노동자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 단협 상의 노동시간 단축 기제들이 이들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단협 효력이 소멸되면 단축조업 등 다른 구제 수단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 독일 기업은 생산기지 해외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수준에서 직장협의회화 '고용 및 경쟁력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내부노동시장의 신축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내부적 신축화' 전략을 추진.

- 독일 사업장조직법에 따르면 임금은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사업장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협의회는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변동급 체계 설정, 개별노동자의 직급 배정에 대한 공동결정권 행사, 정리해고나 자발적 이직 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금 수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침. 특히 1990년대 이후 단체협약 분권화를 상징하는 '개방조항' 적용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와 직장협의회가 합의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산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됨.

- 독일노총의 2004-0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에 해당하는 직장협의회가 해당 사업장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산별협약 수준을 하회한다고 응답. 그리고 독일노총의 2003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1/4에 달하는 직장협의회가 사용자측과 '고용 및 경쟁력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에 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협약 체결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 및 경쟁력 협약' 체결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조정(76%), 직무수행 조직 방식 개편(65%), 임금 삭감(42%)이 이뤄지고 있음.

- 우선 노동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수단은 노동시간계좌제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실제 공장 가동시간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협조.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기업 내부의 이동성 향상, 교육훈련 강화, 작업조직 현대화와 같이 조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로 구성됨. 임금 삭감 관련 방안들은 특별상여금 삭감(20%), 수당없는 연장근로(11%), 추가적 임금지급분을 협약임금인상분배에 포함(11%), 산별협약 수준의 임금 인상 포기(10%), 직급 하향 조정(6%) 등 임금 수준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이뤄짐.

- 종합하면, '고용 및 경쟁력 협약'에서 직장협의회가 합의한 조항들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노력에 조응하는 것. 이렇듯 직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감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대가로 고용유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회피. 반대로 기업들은 내부적 신축화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보존. 독일 기업들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약하는 법·제도와 협력적 노사관계 전통에 따라 가급적 내부적 신축화를 추구해옴.

- 이렇듯 내부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하여 고용신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력 수요변화 충격 흡수 기제를 기업 내부화하는 방식을 일컬어 '내부적 신축화'라고 할 수 있음. 이때 신축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따라 수량적 신축화, 기능적 신축화, 임금 신축화로 구분할 수 있음.

<표5> 독일의 '내부적 신축화' 전략. 자료: 이상민, 2007.

(2) 일본

- 일본에서도 파견근로자 및 기간종업원에 대한 해고와 신규사원의 내정이 취소되는 등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음(<표6> 참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자의 대부분이 2009년 중 계약만료에 따라 대량 실업이 발생.

11) 박명준, 「최근의 경제위기와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2월호.

기업명	발표 시기	고용조정 규모	고용조정 대상
닛산자동차	2008년 10월	780명	파견근로자
마츠다자동차	2008년 11월	1,300명	파견근로자
미쓰비시자동차	2008년 11월	1,000명	파견근로자, 기간종업원
샤프전자	2008년 11월	330명	파견근로자
도요타자동차	2008년 11월	5,800명	기간종업원
도시바	2008년 11월	380명	파견근로자, 기간종업원
일본IBM	2008년 11월	1,000명	정사원
가와사키제작소	2008년 11월	500명	파견근로자, 기간종업원
소니	2008년 12월	8,000명	정사원
일본정공	2009년 1월	2,000명	파견근로자
산요반도체	2009년 1월	500명	정사원
NEC	2009년 1월	20,000명	정사원, 비정규사원, 협력업체 업무위탁 중지
히다치제작소	2009년 1월	7,000명	정사원, 비정규사원
파나소닉	2009년 2월	15,000명	정사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

<표6> 일본 주요 대기업의 고용조정 현황. 자료: 김명중, 2009.

- 그 발단은 2006년에 문제가 된 ‘위장청부’ 문제로서, 이는 청부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 등이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시를 하면서 업무를 담당시키는 불법파견을 의미. 노동자파견법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파견기간이 2007년 3월 이후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6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청부근로자 고용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9년 시점에서 3년간의 고용계약이 만료됨. 노동자파견법 상에는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에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수익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비용부담이 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이어진 것.
-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 후지츠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반도체 공장의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사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 마츠다자동차도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한 사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을 조합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¹²⁾

(3) 이탈리아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2009년 1월 제1노총(CGIL)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노총들과 1993년 체결된 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개정함.
- 1993년 협약은 이때까지 단체교섭의 기본틀로 기능해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매년 예상 인플레이션률에 준거한 소득정책 도입 △전국 차원의 집권화된 중앙교섭과 지역차원의 분권화된 하부교섭으로 이뤄진 이중 교섭체계 도입 △중앙교섭이 하부교섭의 영역을 규정. 1993년 체결된 단체교섭 이원화 체계에 의하면 집권화된 교섭의 주체는 노총과 산별연맹이고, 분권화된 교섭의 주체는 대기업노조(기업별)와 중소기업노조(지역별)임. 참고로, 1993년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단체는 연동제 폐지와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주장하고 노조는 소득정책 채택과 집권화된 교섭구조를 주장함.
- 이탈리아의 임금체계는 고정급(기본급, 호봉승급분 등), 가변급(성과급, 스톡옵션 등), 부가급(유급휴가, 연금, 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가변급은 주로 하부교섭에서 결정. 그런데 하부교섭의 포괄률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측은 하부교섭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저항하는 형세. 노조는

12)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2월호.

- 개별 협상에 따른 임금 신축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국적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신축성을 규제하고자 노력.
- 사용자단체는 1993년 협약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함: △인플레이션률을 ‘권위와 신뢰를 얻은 제3자로부터 계산된 예상 가능한 3년간의 지표’로 대체하고 △분권화된 교섭을 통해 집권화된 교섭의 경제적·규범적 부분을 대체할 것을 주장. 반대로 3대 노총은 △‘현실적으로 예측가능한 물가인상률’에 기초한 소득정책과 △이중 교섭구조 지지를 주장. 결국 2009년 1월 노사정 타협안은 △실질임금의 보존을 위해 새로운 물가지표 도입 △가변급 교섭에 세금·연금의 공제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집권화된 교섭의 경제적·규범적 부분에서 구조조정에 대항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비조항 도입.
 - 그러나 CGIL은 이 협약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하며 협약 체결에 반대. CGIL은 △부족한 임금인상분을 성과급에 연동해서 인상하던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임금 감소와 격차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물가인상률에서 에너지 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인해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CGIL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단체협약 개혁안을 비판하면서 2009년 4월 총파업과 가두시위(270만 명 참가) 전개.¹³⁾
 - 참고로, 올해 5월 CGIL은 4년마다 열리는 16차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위기를 넘어 노동과 권리를 향해(I diritti e il lavoro oltre la crisi)」와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 당면 요구안(La CGIL che vogliamo)」을 채택. 당면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부의 재분배와 반실업 조치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사회 정책 전환 △비정규 고용과 노동권 축소 반대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반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단체교섭 및 투쟁 배치 △광범위하게 분절화된 노동자계급의 노조 조직화 △정책결정 과정의 자주성과 독립성 등임. 이 밖에도 청년 조직화를 위해 청년 대의원 할당을 더 늘리는 등의 방안 등을 제시.¹⁴⁾

(4) 프랑스

- 2008년 1월 노사간 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된 ‘노동시장 현대화 법’이 6월부터 시행. 본 법안은 해고조건을 완화하고 기업 수요에 대한 노동력의 상시 연계를 위한 개별 서비스 확보를 주축으로 함. 사용자와 정부는 지금까지 도입에 실패했던 근로계약 부분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을 환영. 근로계약 합의 파기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부담하던 절차를 개정한 ‘근로계약 쌍방 합의종결 제도’로서 이번 법안의 핵심.¹⁵⁾
- 법안에 대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신중도(Nouveau Centre)는 찬성을, 공산당과 녹색당의 의회모임(GDR)은 반대를, 그리고 사회당은 불참 선언. 2008년 1월 프랑스의 3개 사용자 단체인 Medef, CGPME, UPA와 4개 대표 노조인 CFDT, FO, CFTEC, CFE-CGC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은 효력을 얻게 됨. 그러나 CGT는 협약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 사항은 미약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제도: 무기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에게 의한 해고도, 노동자에게 의한 사직도 아닌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합의해지 제도에 따르면 대상자에게 법정해고수당 및 실업수당을 보장해 주지만, 일단 협의가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에 관하여 다룰 수 없게 됨. 특히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의 확정 및 법적 효과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영역이 아닌 행정적 영역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됨.

13) 이상 이탈리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유럽노사관계전망대(European Industrial Relation Observatory), <http://www.eurofound.europa.eu/eiro/> 참조. 그밖에 한국노동연구원, 『선진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등 변화 연구』, 2009.도 참조.

14) CGIL, “Synthesis of the Congress Document”, 2010.5.

15)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법의 도입과 그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8월호

- 구체적 업무를 정한 근로계약: 구체적 업무를 정한 근로계약은 2004년에 처음 제안된 것으로서, 일종의 도급 계약적 성격을 가짐. 즉 특정한 업무의 완수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이 완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 협약에 의하면 이 근로계약은 산별 협약이나 기업단위 협약에 의하여 가능하며, 기술자나 관리직 노동자만을 그 대상으로 함. 이때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18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대략의 기간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함.
- 사용자단체들은 ‘경직적’이던 해고 절차에 합의해지라는 보다 자율적인 선택지를 추가했으며, 이것이 사법이 아닌 행정권의 범위에서 통제되도록 했다는 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평가.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최종 채용하기 이전에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사르코지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의가 있다는 반응. 즉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르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
- 본 법안에 찬성한 노총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확보가 미흡하지만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 CFDT는 경제위기 대응의 시작점으로서의 협약의 의의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건 완화나 해고수당 재평가 등, 노동자에게 곧바로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FO와 CFTC 관계자들도 협약이 사용자와의 ‘타협’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 보호 문제에 집중할 것을 선언.¹⁶⁾
- 이와 함께 프랑스는 부분실업 기금과 전직지원제도를 도입함. 부분실업 기금은 조업 단축 시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의 60%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시스템.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금속·섬유 등 제조업에서 최대 1000시간(주 35시간제*28주) 동안 지원 가능. 전직지원제도(Contrats de transition professionnelle)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1년 동안 총임금의 80%를 지원. 그밖에도 정부 차원의 고용정책 수단과 별도로, 1999년부터 체결된 주 35시간제 총괄 단체협약에 기초해서 신축적 교대제도와 휴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조업 단축이 가능. 이러한 초기업 차원의 단체협약 외에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시간계좌제와 같은 신축적 노동시간 협약이 가동되고 있음.¹⁷⁾

(5) 영국

-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집권 이후 근로연계복지(work-to-welfare)를 내세워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의 축소를 추진.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둘째, 유럽에서 가장 큰 파견근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노동시장 신축성 증진에 매진. 노동신축화를 통해, 전통적인 전일제 근무라는 형식에 얽매어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사회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여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노동신축화가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¹⁸⁾
- 2010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당-자유당 연정은 기존 노동당 정부의 노동신축화 정책을 보다 강화하면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긴축재정을 실시. 신축노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평등법(차별 시정 정책)과 파견노동자 동등대우 원칙을 개정 내지 삭제할 예정. 또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 내지 인상 폭을 제한하고 향후 수년간 30만-7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발표.¹⁹⁾

4) 소결

16) 이정원, 「프랑스의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2월호.

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앞의 글.

18) 하세정, 「영국의 유연근로제 신청 확대를 둘러싼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7월호.

19) 이정희, 「영국 연립정부의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6월호.

- 2009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2010년 각국 정부의 실업급여와 재취업 부조는 2009년보다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 그러나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거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지출을 다시 삭감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 또한 2010년 말, 2011년 초에 실업급여 범위 확대, 실업급여기준 완화, 조업시간단축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수요 진작책 등 많은 위기 대응 수단이 종료. 나아가 세계경제가 2010년 하반기 이후 다시 침체될 우려가 있어 저성장-고실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의 경우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대표적으로 독일이 도입한 조업시간단축제의 경우 포괄 노동자 범위는 일부 상용직과 무기계약 노동자로 한정됨. 반면 일용직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음. 일용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의 경우 조업시간단축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프랑스나 네덜란드에도 파견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분 실업, 또는 조업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보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조업시간단축제가 임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대체로 생산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의 효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주로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되었음. 프랑스도 합의해지라는 보다 신축적인 해고 방안을 법제화했고,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개악하여 노동 신축화를 강화하는 과정임.

3. 세계 주요 노조의 경제위기 대응: 지역·국가별 유형

- 노동조합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유럽 노조의 코포러티즘, 미국 노조의 민주당 공조,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1) 유럽의 코포러티즘: 노사합의·사회협약

- 개별 민족국가 수준에서 볼 때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와 사용자 간에 거시적 타협이 이뤄짐. 정부는 노조에 대해 고통스러운 개혁과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신 노조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형국. 기업 수준에서 볼 때, 노사 ‘고통분담’이 제조업 부문에서 특징적인 양상. 사용자는 노조가 기업의 중기적 생존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신 단기적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부여.²⁰⁾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각국은 은행 국유화, 산업/기업 지원, 경기부양책 등 공공정책을 실시. <표7>을 보면, 단기 노동시간 조정 조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관계 입법, 실업 급여, 기업 지원 등에 있어 3자 합의 기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노사 모두가 현장 및 지역별로 협약을 체결함. 즉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에서는 노사정 3자간 논의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에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기됐고, 이는 일국 수준에서 노사정협약으로 귀결되었음.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노사정협약은 전형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이었음.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됨. 경제위기 대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로 인해 ‘거시대화’는 주로 3자협상이었는데, 협상 쟁점은 대개 노동신축화.
- 노사간 또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위기에 대응한 사례들을 보면, 대개 위기가 일시적이라는 가정 아래 임시 조치에 합의한 것이 특징. 경제위기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임시 조치는 정부 재정이나 기업의 노동비용, 노동

20) Paul Marginson, “New forms of co-operation, new forms of conflict”, *Socio-Economic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2010.

자의 임금 수입 모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 작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²¹⁾

- '사회적 파트너십'과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통한 노조·사용자단체의 정책결정 참여를 일컬어 '유럽 사회 모델'이라고 부름. 이러한 관행이 유럽 전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노조와 사용자 조직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	정책 수단
오스트리아	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자 지원 확대
벨기에	단체교섭 또는 실업기금을 통한 일시적 노동시간 단축, 실업자 지원
네덜란드	임금 조정, 파트타임 촉진, 실업자 기술 훈련 강화
이탈리아	'소득 및 기술훈련에 관한 노사정 협약', 지방정부-사용자-노조 간 지역별 협약, 특별임금보장기금 접근성 강화
슬로베니아	기술교육 연계 노동시간 단축
슬로바키아	정부-중앙은행-노조-사용자단체-자치정부기관-상업은행 간 경제위기협의회 설립
폴란드	노사정 협정 체결 안됨
프랑스	부분실업기금, 전직지원제도
헝가리	소액대출 확대, 대출보장, 해고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 보조
아일랜드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한 국민[경제] 회복 지원 조치'
리투아니아	노사정 3자 협정
루마니아	실업지원 기간 연장, 실업자 기술훈련
룩셈부르크	노사 협의 후 정부의 위기 대응책 발표. 구매력 보조, 다양한 재정정책 구사

<표7> 유럽의 노사정 3자 기구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노동시장 위기 대응 조치. 자료: ILO, 2010.

-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부분실업 기금'(프랑스), '조업시간단축제'(독일) 등의 조치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도입됨. 이 조치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노조가 일정한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대신 사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사정 타협책. 정부가 지원하는 단기 노동시간 조정 조치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서유럽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라 그 범위와 수급권한이 확장되었고, 중부·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도입.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파견직·기간제)에게도 새로 적용되기도 함.
- 이 조치들은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회복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노사 모두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냄. 즉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 인적자원(장기 고용 숙련 노동자)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 신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정부 지원은 노사 간의 조업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공되며,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간 신축성에 관한 포괄적 단체협약에 따른 조업 단축과 함께 이루어짐.²²⁾
- 반면 해고 비용이 높지 않고 노조가 분절화되어 있고 단체교섭이 분권화되어 있는 영국·아일랜드 또는 동유럽에서는 조업단축과 같은 위기 조치들이 주로 기업 차원 단체교섭을 통해 시행. 이런 나라의 기업들은 내부적 신축화 대신 해고와 같은 외부적 신축화에 의존하는 경향.

2) 미국: 민주당 공조 하 친노동 정부 로비

-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대선 국면에서 미국 노동조합의 주된 전략은 오바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지지와 로

21)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류주형,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 『사회운동』 2010년 7-8월호 참조.

22) 이상 경제위기 하 유럽의 노사합의 또는 노사정협약에 대해서는 ILO, "Negotiating the crisis? Collective bargaining in Europe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2010.3. 참조.

비. 2008년 대선에서 미국노총(AFL-CIO)과 2005년 미국노총으로부터 분리한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오바마 후보를 적극 지지.²³⁾ 오바마 당선과 친노동계 인사인 힐다 솔리스(Hilda Solis)의 노동부장관 발탁 등으로 한껏 고무된 노조가 오바마 정부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노동자자유선택법(Employment Free Choice Act, EFCA)의 입법화.²⁴⁾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 전 상원의원이었을 당시 노동자자유선택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자유선택법은 선거유세 당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음. 노사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가 큰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 더구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오바마 정부의 주요 의제로 올라가기란 애시당초 어려운 상황이었음. 위기에 처한 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 노동자자유선택법이 통과된다면 나름의 탈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소극적인 기대만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리 만무. 이러한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태도는 정당에 대한 로비로 정치활동을 국한시킨 과거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²⁵⁾
- 오바마 정부가 취임 초 제시한 경기부양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미국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함. 첫째, 경제위기 상황이 오바마의 노동정책 전반에 객관적인 제약 요소가 될 것. 둘째,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노동 성향의 노동장관이 내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클린턴 정부 당시 경제관료들의 반대로 노동개혁 이슈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됨). 셋째, 결국 경제위기는 사용자의 입지 강화와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사용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자유선택법안 통과, 안전기준 재개정과 초과근무규정 개정 등에 반대할 것. 설사 노동자자유선택법안의 통과로 노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²⁶⁾

23) 미국노총이 제시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의회와 부시 행정부에 모기지 시장 구제를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폐업의 물결을 중단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 이익에 복무해야 하지만 재앙을 몰고 온 관행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익을 얻은 기관들에게 무기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행정부의 계획이 단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실질적인 고통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노총은 자본시장 안정화 프로그램과 금융서비스산업 내 단기 상품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 공황과 금융 인프라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양자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은 아니다. 영구적인 해법은 금융 시장 재-규제, 기간 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두는 정부, 모든 미국을 위한 의료보험, 퇴직연금을 보호와 개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이 창출한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한 교섭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의 경제 프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승리혁신동맹도 기간시설·녹색일자리·보건의료·교육·노동자자유선택법 등 8개 항목 대선강령을 발표했고, 이들 역시 오바마를 지지. 이상 Dan La Botz, “World’s Labor Federations React to Financial Crisis with Proposals from Re-regulation to Socialism”, in Monthly Review Magazine, 2008.10. [부분 국역: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24) “미국 노동계가 요구하고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정을 약속한 노동자자유선택법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 가입 카드에 서명한 경우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비밀투표 같은 성가신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해당 노조를 공식적인 교섭 대표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노조 가입을 위해 종업원들은 카드 서명이나 비밀투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종업원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간에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노조 와해를 기도하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기도 어렵게 됐다. 노동자자유선택법은 교섭 개시 9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 누구나 연방조정화해위원회(FMCS)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 개시 30일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을 강제중재(binding arbitration)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권한을 줌으로써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의 중재를 통해서라도 단체협약 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노조 결성 이후 단체교섭을 무한정 지연시키던 사용자들의 관행이 줄어들고,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자유선택법은 노조 가입과 결성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막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회복시킴으로써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효원, 「오바마 시대, 미국 노사관계에 불 새 바람」, 프레시안, 2008.11.24.

25) 비센트 파나마 알바, 「미국 노동조합과 세계경제위기」, 『월간 사회운동』, 2009.3-4.

26) 정선옥, 「오바마 당선과 금융위기: 위기가자 기회」,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2월호.

- 현재 노조의 대정부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노동자자유선택법과 이주제도 개혁은 줄곧 유예되어 있는 상태. 노동조합의 오바마 정부에 대한 낙관주의에는 암운이 드리워져 있음.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자체의 심각한 위기. 단적으로 공식 실업률이 10%를 상회하고(실질 실업률은 그 이상), 금융위기의 충격은 주택문제 등 노동자계급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 또한 노조 내부의 분열도 큰 위기 요소. 미국 노동조합의 대표적 조직인 북미서비스노조(SEIU)의 조직 내분과 부패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 논란의 중심에는 얼마 전까지 SEIU 위원장을 역임한 앤디 스텐이 위치. 이는 SEIU의 조직화 중심 전략의 이면에 도사린 실용주의의 위험을 환기. 노조는 오바마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거 합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²⁷⁾ 향후 이주노동자를 성공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노조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²⁸⁾

3) 남반구: 브라질과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 본 정치세력화

- 북반구 주류 노조운동의 퇴조에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새롭게 주목받은 브라질노총(CUT)과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경제위기 대응 현황을 살펴봄. 이 두 노조는 남반구 노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

(1) 브라질노총(CUT)

- 브라질노총은 브라질이 가장 늦게 경제위기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가장 빨리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 브라질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세 달 동안 일자리가 80만개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빴지만,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일자리가 80만개 이상 늘어남.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지만, 브라질 정부는 금융 자본의 투기와 급격한 경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
-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브라질노총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위기 대응보다는 2010년 대선 승리로 모아지고 있음. 노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우파가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 한편에서는 노동자운동이 브라질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는 듯. 지난 몇 년간 브라질노총을 위시한 노동자운동은 물라 정부가 수행한 재분배 정책과 노동조합에 호의적인 정치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사고.
- 대선과 별개로 브라질 노동자운동이 2010년에 집중하려 하는 것은 노동조합 교섭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장 수준에서 현장 활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 브라질 정부는 노동당에 의해 8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보수당이 다수당인 관계로 대부분의 노조 관계법이 예전 수준에서 개정되지 않고 있음²⁹⁾. 이러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기존 노사관계법의 독소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교섭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노총은 노사정이 전국적 수준에서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표준을 확정할 수 있는 국가 노동 계약(CCNT)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사용자단체를 압박.

27) 2009년에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은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등록이주자를 합법화하라는 요지로 이주제도의 포괄적 개정에 관한 공동 입장을 채택함. 그러나 미등록이주자의 합법화 대상과 범위에 관해 입장이 모호하고, 특히 합법화로 인해 멕시코로부터 인구가 과도하게 유입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경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상 AFL-CIO and Change to Win, "The Labor Movement's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2009.4. 참조.

28) Ruth Milkman, "The US labour movement and the audacity of hope", *Socio-Economic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2010.

29) 대표적으로는 지역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조항이 있음. 브라질에서는 산업별 노조가 지역(혹은 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복수의 산별노조가 허용되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별로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데, 초민족적법인기업들이 그린필드(무노조 혹은 어용노조 공단)에 신규 공장을 지으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기 때문. 이상 조돈문, 「브라질 자동차 산업 구조 재편과 노사관계」, 『경제와 사회』 76호, 2007년 겨울. 참조.

- 이러한 브라질노총의 상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순을 보여줌. 브라질노총의 ‘신노조주의’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브라질노동자당(PT)은 룰라의 대선 도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집권 전략을 수립. 이 과정에서 중간계급을 포괄하는 계급연합 전략을 추구하게 됨. 노동조합 또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호응하여 당면 계급 이익을 우선시함. 브라질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2002년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 노동자당은 경제위기 담론을 발전시켜 변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위기의 심화를 부정하며 사회안정과 현상유지를 추구. 그 결과 2002년 집권한 룰라 정부에서 은행 및 기업 국유화와 같은 좌파 고유의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림.
- 물론 룰라 정부의 우경화는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함. 외환위기의 위협에 노출된 외채 규모, 공공 부채와 재정적자 누적, 무역수지 악화와 산업 기반 훼손과 같은 경제 여건은 노동당 집권의 원인인 동시에 룰라 정부 정책대안의 제약 요소. 또는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적 사회정책과 통화주의적 긴축재정 정책 사이의 모순이기도 함.
-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노총은 당면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파와 근본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 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짐. 일부 좌파는 브라질노총으로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노총을 결성하기도 함. 브라질노총 좌파는 노총이 룰라 정부의 방어와 201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룰라 정부의 프레임에 답습하는 것이 개량주의의 위험을 환기한다며 비판.³⁰⁾

(2) 남아공노총(COSATU)

- 2005년 타보 음베키가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된 이후 ANC 내에서는 심한 좌우 분파 투쟁이 발생. 음베키는 ANC의 좌익 노선을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 개혁(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 각종 시장 규제의 철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 과정에서 남아공노총 내부 노선 투쟁 속에서 좌파 진영이 주도권을 장악. 그 결과 2007년에는 남아공공산당(SACP)과 노총의 공식적 사회 개혁 노선 이었던 성장 고용 재분배에 관한 정책(GEAR,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을 폐지하고 폴로콰네(Polokwane)선언이라 불리는 계급투쟁 기반의 이행 노선으로 좌선회.
- 남아공노총은 현 경제위기를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남아공노총의 이러한 입장은 2007년 극렬한 ANC내 좌우 대결을 겪은 이후 노총 내 좌익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 2009년 9월 개최된 남아공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러한 내부 노선 투쟁을 반영하듯이 ANC, SACP, 노총 내 우파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결의들을 제출하고 있음. 가령 국민회의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 노총 내부에서 의회·노동자회사 등에 파견된 간부들에 대한 소환권과 통제, 부패에 대한 감시 방안들, 사회주의 노선에 충실한 중간 간부들의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됨.
- 이어 남아공노총은 지난 해 10월 금융 위기에 관한 입장을 발표. “올해는 남아공과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다. 노동자들이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비용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력과 조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남아공 내 경제 정책 및 전 세계 노동조합 운동과의 연대에 보다 정교하게 개입해야 한다.”³¹⁾

30) CUT 내외부 세력관계와 이념분포는 다음과 같음: CUT 집권파(‘아치폴라상오’) 대의원 80%. 제2정파 CSD 10%. 제 좌파(노동자파OT, 좌파통합AE, 마르크스주의좌파EM 등) 10%. 룰라 정부 출범 이후 좌파 흐름들의 CUT 탈퇴, 총연맹 결성. PSTU(트로츠키주의)→콘루타(Con Luta), PSol(트로츠키주의)→노동자연대(Intersindical), 공산당계(PCdoB)→노동자총연맹(CTB) 결성. 좌파는 재국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하며, 의회주의를 버리고 CUT와 MST 등 대중운동 조직체들을 동원할 것을 주장. 또 경제위기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장. 이상 브라질노총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조돈문, 「브라질 노동계급과 룰라 정부의 경험」,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pp.404-406. 참조.

3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금부터 산업 정책은 고용 창출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지나치게 높아서 거의 25%(좁은 정의를 사용할 때)에 이르며, 현재의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남아공노총의 주요 의제는 SACP와 ANC를 좌익적으로 강화하는 것.³²⁾ 대표적인 사례로 노총은 중앙은행(Reserve Bank)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인플레이션 관리 최우선에서 고용과 복지 중심 기조로 변경. 남아공노총은 2009년 중반에 중앙은행장이 노총과 SACP 사이에 합의된 플로과네 선언의 기치에 반하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력 항의, 통화정책을 변경시킨 것.
- 남아공에서는 2009년 한 해에만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남아공노총은 정부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고용정책을 요구. 노총은 이러한 요구들을 사회주의적 이행이라는 목표에 종속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범케인즈주의적 통화재정 정책과 큰 차이는 없음. 이에 일부 좌파들의 경우 노총이 케인즈주의의 소개자가 되고 있으며, 대중행동을 조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함.

(3) 남반구노조연대회의

- 참고로, 이상 두 노총이 주력을 이루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는 지난 4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언문을 채택함. 선언문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반구노조연대회의의 전략적 의제: △남반구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무역 △금융 투기 중단, 금융시장을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민중의 필요에 종속시키기 △초국적 기업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연대 구축, 착취와 노동권 탄압으로부터 노동자를 방어하기,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촉진 △생태위기 및 기후변화가 노동자·지구의 미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제고 △성평등, 보건안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HIV/AIDS 예방을 위한 캠페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전환 및 국제 권력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노동조합 권리의 방어/확대 △제국주의 공격, 핵무기, 점령, 경제봉쇄, 부당한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건설.
- 당면 주요 과제: △남반구노조연대회의의 조직화 역량 강화 △초국적 기업에 맞서는 일국적 투쟁을 세계화할 수 있는 각 국 노조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니온북, 스카이프, 트위터 등 온라인 도구 활용 강화 △부문별 네트워크 구축(초국적기업, 공공부문, 젠더, 노조교육, 운수통신) △남반구 노동자운동의 민주적 공간으로서 남반구노조연대회의의 강화.

4. 평가와 시사점

1)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 최근 경제위기 시기 유럽 노조의 대응은 대체로 교섭 대응을 통해 정리해고의 수준을 완화하거나 노동신축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는 숙련노동력(‘인적자본’)을 유지함으로써 경기 호전 시 내부적 신축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가 반영된 것.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으로 확립된 노동시간계좌제를 통한 조업시간 단축

정부가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경제의 모든 부문이 최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고용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생각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둘째, 농촌빈민, 특히 기간 시설, 서비스, 토지가 불충분한 이전 반투스탄에 남겨진 이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에 관한 정부의 제안을 근본적으로 재사고해야 한다; 셋째, 재정·통화 정책은 단지 원하는 곳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변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을 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에서 손을 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기회 확대를 지지하는 합리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장과 형사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과 빈민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 조치가 양자의 분야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전국가의 창설을 요구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각을 간소화하고 기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변화는 지속적이고도 엄격하게 우리 사회와 경제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상 Dan La Botz, 앞의 글.

32) COSATU, “Opening address by COSATU President Sidumo Dlamini” at 10th National Congress, 2009.9.

- △그리고 국가 차원의 노동시장 제도를 통한 임금보존 등 다양한 조치가 연결되어 실시. 즉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유럽의 노조들은 신축적 안전성(flexicurity)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남.
- 신축성(flexibility)와 안전(security)의 합성어로서 'flexicurity' 개념은 노동시장의 신축화와 노동의 이동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득 및 사회적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 신축적 안전성의 기본 원칙은 유럽연합의 성장 및 고용 전략의 중심적 요소와 같은 맥락에 있음. 신축적 안전성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 훈련에 기반을 두고 있음.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용안전성과 노동시장 분절화 감축과 결합된 신축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³³⁾
 - 세계은행, 세계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경제위기와 실업에 대한 해법으로 신축적 안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 이들은 일자리의(job) 안전성보다는 노동자의 고용 또는 '고용경쟁력'(employability)의 안전성을 강조. 이런 논리에 따르면 신축적 노동시장을 장려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변화에 적응하는 수단, 즉 노동시장에 머무르면서 노동 생애를 진보시킬 수단이 주어졌을 때 가능.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 안전성 모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평생 학습과 훈련을 추동하고 구직자 지원, 남녀평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내 기회 균등을 지지.
 - 최근 급속노조는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나타난 고용안정협정을 경제위기에 대한 유효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³⁴⁾ 요지는 독일의 고용안정협정이 △기업위기에 대한 노사의 공동인식에 기반하고 노동자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과 산업입지역량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이다; △산별교섭체제와 법제도적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시각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통(특히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에 대한 맹목도 문제거니와 경제위기 아래 고용안정의 대가로 노동신축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노동시간계좌제는 연간 단위의 변형근로제라고 볼 수 있고, 초과근무 수당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를 낳음 (한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가 서구에 비해 훨씬 더 파괴적일 것. 장시간의 잔업·특근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던 상황에서 잔업·특근만 줄어도 노동시간 감소율에 비해 임금 감소율이 훨씬 더 클 것이고 노동자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자 스스로 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이러한 대안은 결국 독일식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로 귀결되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협약'을 통해 단체교섭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물질적 자원을 획득한다는 구상과 연결됨.³⁵⁾
 - 또한 신축적 안전성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곤 하는 '네덜란드 모델'은, 특히 여성노동력 활용을 목표로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사의 양립'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맞벌이 부부의 '1.5 job').

2)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

- 이러한 노조운동의 코포러티즘은 20세기 서구 노조주의의 모순으로부터 기인. 유럽 노조주의는 사회적 합의

33) 리스본전략은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한 '신경제' 전략으로 지식기반경제를 표방하면서, 이를 위해서 노동신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새로운' 신축화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고임금 부문이 아니라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 이는 작업장에서 전반적인 불안정성 증대를 의미. 신축적 안전성이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실업자들의 구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로연계복지 또는 일자리우선 전략을 의미. 이에 따라, 피고용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타 국가 및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는 부차적인 관심사. 또한 신축적 안전성의 전제는 '경쟁력'이므로 이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을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Lars Magnusson, "After Lisbon: Social Europe at the crossroads?", ETUI Working Paper, 2010.

34) 이상호, 「독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협정의 전략적 함의」, 급속노조정책연구원, 2010.3.

35) 이와 같은 독일식 대안에 대한 비판으로는 임필수, 「노동운동 활성화 전략 평가」, 『사회운동』, 2009년 9-10월호. 참조.

를 통해 임금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들였으며, 그 대가로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선택. 이런 의미에서 유럽의 코포러티즘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생산성 임금에 미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³⁶⁾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독일 코포러티즘 모델은 강력한 국가 주도 산업화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주의로 특징지어짐. 그러나 불황기 임금정책을 수용하는 노조는 노동자 내핍 강제기구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임금억제를 정당화. 이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노조는 직업훈련을 담당함으로써 숙련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또 높은 조직률과 강력한 중앙교섭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임금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스웨덴의 렌-마이르너 모델 역시 재정확대가 아니라 강력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인플레이 없는 완전고용을 추구.

-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반경향인 금융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초로 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의 물질적 조건 및 제도를 해체하고 그 결과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를 동반. 산업이윤율의 하락으로 인한 생산의 침체와 금융비용의 증가에 직면하여 경영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을 재배치하고 구조조정을 단행. 고임금과 실업의 동시적 원인으로 노동조합의 경직성이 지적되고,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고 노동의 이동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부가됨.
- 그러나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체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양보교섭을 선택. 이는 자본축적의 성장기에 인정받았던 노조의 교섭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하지만 불황기에 기존 노조의 헤게모니의 물질적 토대가 해체되고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계급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 게다가 기존의 제도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노조의 노력은 종종 노동자운동 내에서 내핍과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역할로 드러남. 그 결과 노동자계급 내부의 이질성과 분절화가 심화.
- 미국노총의 경우, 선임권 규정과 같은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한 속에서 임금과 같은 쟁점에서 일정한 양보를 제공하는 양보교섭 전략을 선택.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며,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점차 축소되는 딜레마.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가 관건이 되고, 교섭력 증대의 전제 조건인 조직율 상승이 주요한 목표가 됨. 이는 영미권에서 종종 ‘신노조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조직화 노선으로 수렴. 조직화 노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노조간 통합, 특히 군소 노조의 흡수를 통한 조직율의 증가 전략. 이러한 시도는 종종 전국적 규모의 ‘조직화 학교’나 ‘지역 사회 캠페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념적 혁신 없는 조직화노선은 최근 SEI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용주의의 다른 판본이기도 함.³⁷⁾

36)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노동과 자본의 ‘타협’(임금과 생산성의 동시적 성장에 기초한 경영과 노동의 생산성 동맹)은 법인자본주의의 산업적 팽창과 높은 이윤율에 의해 뒷받침됨.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 형성되면서 고용수준에 대한 관리가 케인즈주의의 핵심 요소가 됨. 완전고용은 일할 권리 또는 소득에 대한 권리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음. 전후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기 동안 높은 고용수준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강화했고 그것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제도화된 투쟁은 임금수준을 유지. 즉 완전고용은 생산성과 임금의 지속적인 연계를 가능케 했던 조건. 완전고용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정상적인’ 시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또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곧 실업률이 낮다는 것, 따라서 노동자들이 소득의 단절을 겪을 위험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 넓은 의미의 ‘복지’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전고용은 복지의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될 수 있음.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직접임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용을 통해 소득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출’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일종의 ‘간접임금’은 완전고용에 비해 부차적인 위상을 가짐. 미국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기 동안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권력에 기초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적/실리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로 경도.

37) 미국의 노동조합 모델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의 결합물. 전자의 경우는 AFL의 전통에서

- 독일의 경우 산별교섭의 분권화 양상이 뚜렷해짐. 전체 단체교섭에서 기업별 협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1990년 27%→2000년 39%)하고 노조가 없어서 단협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직장협의회도 없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 이는 사용자단체의 조직률 하락과 병행. 또 산별협약에서 기업 수준 노사에 근로조건 결정권의 일부를 위임(1980년대에는 노동시간에 대해, 1990년대에는 임금에 대해 개방 조항이 적용).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신축성 확대를 교환하고 숙련 향상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자초. 1995년 ‘일자리를 위한 동맹’, 1998년 ‘일자리,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과 같은 사회협약 체결. 스웨덴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제1노총(LO)의 독점적 지위가 축소되고 사무직노총(TCO)-전문직노총(SACO)과의 중앙 단체교섭이 분리되면서 연대임금 정책이 붕괴.
- 유럽 노조의 대응은 대체로 위기와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코포리티즘으로 수렴. 유럽통합동맹으로의 이행기인 1990년대 말에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신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국가적 수준에서 경쟁적 코포리티즘이 확립. 이 사회협약의 특징은 △생산성 증가 이하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산업부문에서 기업수준으로 임금협상을 부분적 개방하고 △높은 임금편차를 수용하는 것을 기초로 임금 억제 정책을 노조가 승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의 신축화와 사회보장 및 조세제도를 친기업적으로 개혁하는 것 등.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리티즘인가 단체교섭의 초민족화인가³⁸⁾

- 유럽에서 민족국가 수준에서 임금 억제 정책이 실행 가능했던 것은, 대량실업으로 인한 노조의 협상력 저하와 같은 조건 외에도 유럽화폐동맹의 ‘제도화된 화폐주의’가 바닥을 향한 경쟁을 추동했기 때문.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경쟁적 코포리티즘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적 기업동맹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 즉 탈규제화된 금융시장, 강화된 시장경쟁, 대량실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자본-노동 간(해외이전·투자재배치·해고위협), 초민족적법인기업 내부의 본부-자회사 간(생산성·임금·노동시간·작업조직 벤치마킹 강제), 주주-경영진 간(주주가치지향 단기 실적주의) 세력 관계의 변화를 야기.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유럽의 ‘상징적 코포리티즘’이 작동.
-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득세하기 시작.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EMS)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유럽화폐동맹(EMU)을 위해 제시한 4가지 경제정책 수렴기준³⁹⁾은 민족국가 화폐주권의 소멸을 의미.
-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뤄지지 않음.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

후자의 경우는 CIO에서 연원했지만 2차 대전 이후 AFL-CIO의 결합 속에서 두 모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합. 그것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더 많은 단체교섭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획득한 후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러한 모델은 1910-18년까지의 첫 번째 계기와 1933-1950년이라는 두 번째 계기를 거치면서 완성. 첫 번째 계기는 테일러주의와 법인기업의 형성에 대한 AFL노동자들의 투쟁과 통합을 상징하고, 두 번째 계기는 거대 산업들에서 형성된 새로운 노조주의와 CIO의 투쟁과 통합을 상징.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인자본 자유주의’를 노동자들이 수용하고, 그러한 수용에 근거해서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일 요소가 되는 과정.

38) 아래에서 유럽노조연맹(ETUC) 또는 유럽금속연맹(EMF)의 단체교섭 초민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Thorsten Schulten, “Europeanis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WSI Discussion Paper No.101, 2002; Andreas Bieler,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transnational restructuring of social relations: the emergence of labour as a regional actor?”, 2005. 참조.

39) △이자율은 가장 낮은 3개국의 그것보다 2%를 넘으면 안 되고 △환율은 바로 직전 2년간의 유럽화폐제도 변동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인플레이션은 가장 낮은 3국의 평균치의 1.5%를 넘을 수 없으며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은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해야 함.

이 강한테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 이에 회원국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됨. 그리고 기술력과 생산성이 열세인 국가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됨.

- 유럽단일시장이나 유럽화폐동맹과 같은 핵심적인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시장주도의 부정적 통합을 강화했고 이것이 민족국가 수준의 단체교섭에 강한 영향을 끼침. 앞서 지적했듯이, 1980년대에 이미 유럽은 '생산성 지향'에서 경쟁 지향적인 단체교섭 정책으로 선회. 그 결과 지난 20년간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국민소득 대비 임금분배율은 꾸준히 하락.
- 유럽화폐동맹이 부과하는 조건 속에서, 노동비용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이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로 간주되었으므로 국가들은 저마다 노동조건외 사회적 덤핑이나 임금덤핑을 시도. 이와 함께 유럽연합 산하 각종 기구에서도 경쟁 지향적 단체교섭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함.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ttee)가 기초한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을 채택. 이는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 이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
- 유럽의 노조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처함. 한편으로 유럽의 화폐·경제적 통합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경쟁을 부과하면서 점점 더 단체교섭의 기초 기능을 침식. 다른 한편으로 민족상위적 유럽 단체교섭 체계는 가까운 미래에서 출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무렵, 유럽 노조들은 단체교섭 정책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노조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유럽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에 착수하기 시작.
- 그러나 단체교섭의 유럽화에 관한 초기의 이론적·정치적 논쟁은 대부분 '유럽의 사회적 대화'에만 초점. 유럽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사이의 연관은 많은 측면에서 오도됨. 첫째, 유럽의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는 주제(덜 갈등적인 '연성 이슈')는 민족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규 단체협상이 다루는 주제(임금·노동시간과 같은 분배갈등을 둘러싼 '강성 이슈')와 많은 차이가 있음. 게다가 유럽연합사회의정서에 임금 및 과업·단결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등 유럽의 단체교섭 체계에는 기초적인 법적 선결조건이 부재했음.
- 유럽의 사회적 대화의 내용적 빈곤과 법적 완결성의 한계는 노조(사회·노동 표준에 대한 경쟁적 탈규제에 대항한 민족상위적 보호)와 사용자 단체(사회적 규제를 회피하고 국가간 경쟁을 활용한 이점을 누리고자 함)가 근본적으로 유럽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 유럽연합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노조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결정 영역에서도 노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조들을 유럽통합 프로젝트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하기 위한 것일 따름. 실제로도 1990년대 유럽노조연맹(ETUC)은 유럽의 사회적 대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춤.
- 그런데 1990년대 말 유럽금속연맹(EMF)을 비롯한 가맹 조직들의 발의에 따라 유럽노조연맹은 유럽차원의 '단체교섭 조정'을 새로운 '유럽의 노사관계 체계'에 관한 4가지 주요 결의사항 중 하나로 채택. 즉 임금 삭감 및 노동조건외 악화를 통한 소셜덤핑의 위험. 유럽금속연맹은 생산의 초민족화가 진전되면서 임금교섭이 더 이상 일국이나 특정 산업부문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 △소득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임금 덤핑 반대 △소득 불평등 반대 △생활 조건 격차 해소 △성평등 원칙의 현실화를 주요 목표로 제기.
- 유럽금속연맹의 제안을 받아 유럽노조연맹은 각국 단체교섭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단체교섭 조정을 위한 '유럽 가이드라인'을 채택. △정규 임금인상은 이윤과 임금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총임금 인상에 분배되는 생산성 비율을 최대화하면서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 잔여분은 단체협상의 여타 의제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이 평행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
- 유럽노조연맹은 이 가이드라인이 다음 목표에 부합한다고 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확대경제정책가이드

라인과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서 노조들이 임금협상의 일반 지침을 가질 수 있고 ‘거시경제적 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유럽에서 사회적·임금 덤핑과 임금의 분기를 막을 수 있음 △유럽 내에서도 임금 지불이 쉽게 비교될 수 있는 단일통화지역에서 임금 요구안을 조정할 수 있고 △결국적으로 생활조건을 상향 수렴할 수 있음. 이러한 ‘임금 공식’의 활용은, 임금인상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조로 하여금 유럽 수준에서 임금 경쟁을 하지 않게 함. 또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한 유럽에서 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

- 유럽노조연맹이 ‘사회적 유럽’을 상징적 매개로 하여 노동3권의 초민족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지양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 하지만 유럽통합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코포러티즘의 잠재적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유럽 차원의 노사관계가 그 목적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실상 유럽연합은 ‘사회적 파트너’로서 어떤 권위 있는 대화당사자(즉 노사정)도 없으므로 최소한의 실체를 가진 정교한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또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되면서 거버넌스의 하위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해야 함.⁴⁰⁾

4) 노조운동의 이념과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방어적 조직’.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이러한 노조의 일상적 방어투쟁의 일환. 중요한 것은 방어투쟁의 방식, 즉 연대지향적인 방식인가 자기중심적 방식인가라는 쟁점. 노동조합을 통한 방어투쟁의 특정한 방식은 ‘노조주의’를 통해 표현. 노조주의는 특정한 조직형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념과 노선을 포함. 노조주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동반하지만 ‘정치노선’으로 환원되지 않음. 오히려 그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자대중이 어떤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하며, 활동가들은 어떠한 지향과 활동방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에 가까움. 따라서 노조주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조직과 활동 노선을 포함. 즉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일반에 관한 특정한 이론이나 관념을 동반.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조주의 내에서 사회운동적인 요소를 추출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대중 내부의 계급적 통일성을 증가시키고, 내적 배제를 제거한다는 기본적 이념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 이러한 이념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통일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나타나며, 종종 노동조합으로 포괄되지 않는 실업자 운동이나 여타 민중부문과 연계 전략을 동반.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의 코포러티즘이나 양보교섭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자초하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일례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2007년 단체협약에서 기존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 이로써 UAW 가입 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미국 내 조업 중인 아시아계 자동차 회사 인력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러한 양보 조항이 현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되 현 UAW 조합원의 퇴직에 따른 신규 대체인력 채용 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UAW는 수십억 달러의 운영자금을 자동차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퇴직자의 건강보험 급부를

40)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빌러와 슐텐은 다음 방안을 권고함. ①유럽 노동자운동은 EU에 대한 ‘조건부 승낙’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하고, ‘사회적 유럽’을 향한 실질적 규제가 있을 때에만 경제 통합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②노조는 유럽적 수준에서 협력과 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야 함. 유럽 노조들의 중차대한 과제는 민족국가별 투쟁을 연결하고 이 투쟁들이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맞선 유럽적 투쟁임을 분명히 하는 것 ③유럽 노조 조직들은 EU 제도 틀 안에서 활동하는 로비 조직과 자신을 분별 정립하여 유럽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EU가 설정한 틀에서 수동적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의제를 더욱 적극화하는 것을 의미 ④노조는 여타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불캐슈타인 지침 반대 투쟁의 사례와 유럽사회포럼의 사례). 이상 Andreas Bieler and Thorsten Schulten, “European Integration: a Strategic Level for Trade Union Resistance to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for the Promotion of Political Alternatives?”, 2008. 참조.

VEBA(Voluntary Employee Beneficiary Association) 신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해 회사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여줌. 간단히 말해 UAW는 저비용의 미래 노동계약(2010년경 발효)을 마련함으로써 현 조합원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기업을 살릴 급부를 제공한 것.⁴¹⁾

5) 노동조합 국제주의: 대안세계화-대안지역화

- 앞서 살핀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 실험이 봉착한 딜레마는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이른바 ‘당 좌파’와 ‘사회운동 좌파’의 갈등으로 표현된 바 있음. 1980년대 평화협상을 거쳐 선거정당으로 전환한 기존 사회운동 세력은 1990년대를 거쳐 선거정치와 신자유주의에 순응하게 되었고, 일부는 NGO로 흡수. 이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적 법인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참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에 전도. 이에 반해 1990년대 후반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기존 정당과 노동조합이 선거정치에 매몰되거나 코퍼리티즘을 수용하면서 대중운동을 분할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시도.⁴²⁾
- 그러나 최근 세계사회포럼으로 상징되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추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단적으로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럽연합 자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시기에 개최된 유럽사회포럼은 참여도도 저조했을 뿐더러 경제위기 대안에 대한 합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⁴³⁾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대안적 지역통합의 사례로 주목받은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연합의 사회운동의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음.
- 우선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페트라스⁴⁴⁾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2000-05년 사회적 위기 속에서 등장한 중도좌파 정권, 즉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⁴⁵⁾ 속에서 사회운동의 자율성과 급진성이 탈각되고 있음.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는 우선 대중운동을 탈급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사회복지·위기관리 정책을 도입한 뒤, 경제회복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들은 ①규제되지 않은 자본(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반대 ②호혜적이지 못한 자유무역협정(가령 FTAA)에 대한 반대 ③농산물-광물 수출 부문에 대한 증세 ④강력한 코퍼리티즘적 경향(운동 지도부와 조직을 국가기구에 통합) ⑤미국을 제외한 지역통합 조직(UNASUR) 지지 ⑥무역 및 투자 다변화 전략을 추구함.
- 무엇보다도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는 재분배정책이나 근본적인 소유권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개발주의’ 이

41) Glenn Mercer, John Paul MacDuffie, 「미국 디트로이트의 위기: 원인, 실태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2월호.

42) 이에 대해서는 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2006년 4월호 참조.

43) 유럽사회포럼의 노동자총회 성명은 다음과 같음: △내뺄(건축제정) 프로그램 반대, 임금·연금·노동조건 악화 반대 △국제적 전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사회운동의 공세적 대안 마련 △유럽노조연맹이 발의한 9월 29일 유럽 공동행동 조직 등. “Statement of the Assembly of Labour”, at the 6th European Social Forum in Istanbul 1-4 July 2010. 참조.

44) James Petras, “Latin America’s New Middle Class Rulers: Stabilization, Growth and Inequality”, 2010.5.21.

45) 페트라스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함: ①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엘리트층을 거부한 대중운동의 산물 ②세계,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무토지 농촌 노동자, 농민, 인디오 공동체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 심각한 경제·사회 위기의 결과 ③외국계·국내 은행·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거나 사유 기업을 재국유화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경제 자극 정책을 채택 ④신자유주의 계급 체계의 불평등을 유지하면서 빈곤 프로그램, 실업수당, 중소기업 보조, 투자유발 고용과 같은 정책 도입 ⑤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늘어났으며, 일부 농산물 수출세도 증가했음. 그러나 토지와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없었음 ⑥광물과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민간(특히 다국적 기업)과 공공의 공동 사업이 추진됨 ⑦제도 정치가 의회 외적인 대중운동을 대체함.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는 국가-세계-사회운동의 사회협약에 기초한 ‘코퍼리티즘적 정치’를 장려함(이윤을 통제하지 않고 임금을 통제함) ⑧수출 확대·다변화에 기초한 ‘발전주의 전략’을 추구함. 건축적 통화·재정 정책과 점진주의적인 소득 정책을 구사함.

데올로기를 채택(투자·성장 극대화 추구). 즉, ‘자유시장 신자유주의’로부터 ‘포스트 신자유주의 개발주의’로의 이동. 이는 금융·은행 그룹보다는 농업·광업·제조업 엘리트들과의 동맹에 기초. 새로운 개발주의 체제는 인민주의·사민주의 정치가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자본주의의 변종(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 이러한 ‘반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모호성으로 인해 개발주의 지도자들은 여하한 반자본주의적 조치 없이도 자신들을 대중적 반란의 일부로 표상하고 2000-05년 봉기의 분출과 동일화할 수 있음. 이때 반신자유주의적 수사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정상화하고 정치·사회적 균형을 창출하는 것.

- 따라서 페트라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는 첫 걸음은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과 분명히 단절하는 것으로 바라봄. 그 핵심은 자주적인 사회운동과 자율적인 계급적 노조를 재창조하는 것. 좌파는 자율적인 노조의 경제투쟁과 계급적-인종적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함.
- 다음으로, 유럽 노조에 대해서 하이먼은 ‘사회적 차원’ 또는 ‘사회적 파트너십’이 유럽 통합 과정에서 ‘인간의 얼굴’이라는 이미지 속에 노조라는 잠재적 반대자를 동맹자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 가령 리스본전략(2000년)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다”는 것, 이때 언급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귀결되고 국가경쟁력은 유럽고용전략(EES)에서 말하는 “적응성”, 즉 신축적 안전성으로 귀결. 유럽의 노동조합은 대안적 전망을 향한 동원력을 상실한 결과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이니셔티브를 계속 상실해옴.⁴⁶⁾
- 비슷한 맥락에서 하이먼은 이번 경제위기 시기 개별 노동조합의 대응이 ‘국가 대 국가’나 ‘사업장 대 사업장’ 갈등(국가간-기업간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심화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방어하거나 향상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비판. 경제위기 아래에서 유럽 노조는 때로 전국적 총파업이나 기업 수준의 급진적 투쟁을 펼치기도 했음(가령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관리자를 납치했으며, 영국에서도 해외 하도급으로 인한 실업에 항의하는 비공인파업이 큰 반향을 일으킴). 그러나 급진적 행동 형태가 급진주의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경우, 작업장 투쟁은 저항이나 절망의 제스처였음. 그 목적은 해고를 제한하거나 일괄 정리 해고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투쟁은 대개 타결이 수월했음.⁴⁷⁾
- 그리스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유럽의 노동조합 운동이 역내 불균형과 노동자들1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체제 친화적.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인 케인즈주의적 타협을 모색해 보자는 주장.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호황기에 일부 중심부 국가에서 가능했던 일국적 케인즈주의 모델을,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무망한 시도.⁴⁸⁾

6) 경제위기 전망

- 2007-09년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재정위기가 폭발하면서 노조의 대응은 더욱 방어적으로 경도되는 인상. 특히 노조의 대응이 개별 기업이나 민족국가 수준에서 고착되면서 세계화·지역화에 대한 국제주의적 대안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이념적 전망의 소실과 신자유주의적 반격 속에서 노조의 이념적·조직적 혁신 전략이 역시 아직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에

46) Richard Hyman, “Trade unions and the politics of the European social model”, LSE Research Online, 2005.

47) Richard Hyman and Rebecca G. McCormick, “Trade unions and the crisis: a lost opportunity?”, *Socio-Economic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2010.

48) Peter Waterman, “From ‘Decent Work’ to ‘The Liberation of Time from Work’”, 2005.

서 기인함. 무엇보다 현재 세계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 세계 경제는 대체로 2009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로 반등하고 있음. 그러나 남부유럽 재정위기는 해당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함께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나아가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의한 세계적 금융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 단기간 안에 경기침체가 재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윤율 궤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재발하면서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설령 경기가 일정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민중적 대안의 모색이 노조운동의 부활에서 결정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이념 속에서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의 회복이 필요함. 이는 단체교섭의 행위자로서 노조가 사회·정치운동의 주체로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 과정에서 노조의 민족국가적 전략과 세계적 전략 사이의 가교를 놓는 것도 중요함.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국제적 대응 속에서 노조는 초민족적 수준의 노동의 대표이자 사회·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있어야 함. 그밖에 중국 노동자들의 최근 투쟁 사례서 보듯이 초민족적법인기업에 대한 각국 노조의 공동 대응과 국제적 네트워크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끝.